#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96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김정호

송옥주 · 추미애 · 이기헌

민형배 • 한정애 • 조계원

서영교 · 정성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사항의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산하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참여 보장·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의 경우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 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 데 현행법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성별을"을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위촉직 위원의"를 각각 "전체 위원 정수의"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성별을</u> 고려하	위촉할 때에는 <u>청년을 대표하</u>
여야 한다.	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
	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며,
	<u>성별을</u>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⑦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	
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	
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청년을 대표하
	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
	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⑧・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생 략)	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2
시 · 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	
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	

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⑥ (생 략)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 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 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 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전체 위원
<u> 정수의</u>
<u>전체 위원 정수의</u>
전체 위원 정
수의
<u>.</u>
③ ~ ⑥ (현행과 같음)
세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1. LUOI ED/

<u>&lt;신 설&gt;</u>	5.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
	<u>당 지원</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